

##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 4월부터 3년간 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교육기관 15곳 지정
- 8월부터는 교육기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新)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첫 지정시 15곳으로 '21.4~'24.3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약 71만명이 교육을 이수함

□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4.4~'27.3)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 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하였다.

\*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

□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재)한국건설기술인정책연구원에서 수탁받아 교육기관 관리·감독 시행

- 또한,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 기술인이 교육기관의 교육편성 내용을 비교 검색하여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을 홍보하는 등 교육 수요, 공급자가 공동 사용하는 시스템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 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명준 (044-201-3549)
		담당자	사무관	장미선 (044-201-355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

**교육·훈련 대행기관 갱신 및 신규지정 선정**

\* 가나다순

가.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시설 위치	교육 기술분야	비고
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남동구	모든 분야의 기본 및 전문교육	갱신
(재)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시 북구		갱신
(재)건설산업교육원	서울 강남구		갱신
경북대학교	경기 남양주		갱신
(재)송암능력개발원	대구 동구		신규
(재)스마트건설교육원	서울 용산		갱신
(재)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북 영천		갱신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 음성		갱신

나.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시설 위치	교육 기술분야	비고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서울 종로구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갱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서울 강남구	건설사업관리	갱신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경기 성남	설계시공	갱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 영등포구	측량	갱신
(재)한국능력개발원	광주시 동구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갱신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 영등포구	설계시공 (상하수도)	신규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광주 남구	설계시공	신규

## 참고 2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 □ 목적

-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 □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시행령 제42조 [별표3]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호)

### □ 교육·훈련 대행기관 종류

구 분	내 용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 교육·훈련 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

### □ 교육·훈련 혜택 및 행정처분

구 분	주 요 내 용
혜택	교육이수자에게는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지 가점 부여 및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교육 가점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고용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 □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 가. 기본교육(공통)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전문교육(최초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교육	35시간 이상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으로 최초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중급	70시간 이상	건설ENG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특급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초·중·고·특급	35시간 이상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다. 전문교육(계속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일반	초·중급	14시간 이상	
		고·특급	49시간 이상	
	필수	초·중·고·특급	7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가산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기술인	초·중·고·특급	35시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가산	

### 라. 전문교육(승급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초·중·고급	35시간 이상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35시간 이상	
	중·고급	70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초·중·고급	35시간 이상	

### 참고 3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개요

### □ 개요

○ (목적)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운영 등 교육정보 분산으로 인한 기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교육기관), 교육기관 감독 등(교육관리기관), 기술인의 교육이수 이력(경력관리기관)

○ (주요기능) 교육관계자가 공동 이용하되,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 구성

- (기술인) 이수할 교육, 기관별 교육과정 등 검색

- (교육기관) 교육계획, 교육과정 및 훈련생 등록 등 정보 제공

- (교육관리기관) 교육기관 정기평가, 강사풀 관리 등

<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성도 >

